

남북문인의 '금서' 출판과 저작권 문제

韓勝憲

한국저작권연구소장·변호사

P형! 벌써 9월입니다. 6월사대로 불어닥친 민주화바람이 여러 분야에서 한창입니다. 문화해금이니 출판의 자유화니 하는 말이 정부 쪽 사람들의 입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해금'이라 해서 그동안 판매금지를 당해왔던 '금서'들이 풀리는가 하면 대중가요의 금지곡도 방송에서 들을 수 있게 되는 모양입니다.

금지니 처벌이니 하는 굴레가 현실적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마 P형도 그동안의 납득할 수 없었던 규제가 풀리는 것을 '만시지탄'이란 느낌으로 눈여겨보고 있을 줄 압니다.

남북 문인들의 해금 운운 기사도 변화라면 변화지요. 6.25를 전후하여 북으로 간 지식인들을 월북이든 납북이든 간에 마치 이 세상에 실재한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지워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다. 설령 월북한 사람이라고 한들, 그들의 작품과 행적을 알지 못하게 막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납북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더우거나 그렇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납북작가의 해금이 국문학과 문단을 중심으로 거론되어 온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당연한 현상이었으며 아직껏 빗장을 잠가놓은 채로 끌어온 정부의 처사가 너무 안일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는 김기림이다 정지용이다 하고 특정인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단계인데, 이왕 푸는 마당에 어설플 선별해금보다는 대범한 일괄 해금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모두 풀어놓으면 별 일도 없을터인데 인색하게 굴면서 가두어놓으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지요.

“남북작가들의 저작권에 관한 특례법이라도 만들어 그들의 저작권을 민법상의 재산상속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납북작가 해금설과 더불어 재빠르게 움직이는 출판사들이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이미 조판해놓은 곳도 있고 심지어 제본까지 마친 곳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납북작가들의 책이 봇물 터진 것처럼 앞을 다투어 출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납북된 사람들이 남긴 저서의 저작권을 놓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처럼 반가와해야 할 문화 해금을 저작권의 시각(視覺)을 통해서 따져보는 저작권학도의 걱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설책이든 시집이든 간에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작가에게 있습니다. 즉 작가는 저작자이자 저작권자입니다. 작가가 납북되기 전에 자기 작품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양도하지 않은 이상, 설령 이북에 가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작가만이 저작권자입니다. 납북 당할 때에 가족에게 내 책의 저작권은 당신에게(또는 너에게) 양도한다고 일러놓고 갔을 리는 없는 터인데(말로만 양도해도 대항력이 없다) 가족에게도 저작권을 행사할 권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으로 간 문인들의 책을 출판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P형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

는 길이 正道인 줄이야 알지만, 이북으로 간 사람한테서 허락을 받아낼 방도는 지금으로선 없으니 말입니다.

차선책으로, 남한에 살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으로부터 출판허락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법 밖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법적으로 말하자면,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한, 더 정확하게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의 아내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권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출판을 허락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허락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만큼 적법한 허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만일 북으로 간 어느 작가가 사망했다면 그의 유족이 민법이 정하는 상속 순위와 상속분(몫)에 따라 저작(재산)권도 상속이 되는 것이니만큼, 유족의 허락에 의해서 적법한 출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문인들의 생사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설령 그 중 특정한 사람의 사망이 북한의 신문·방송을 통해서 알려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북한 측의 보도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사망 처리를 하기는 실정법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90세가 넘고 100세가 다 된 고령자는 이 세

상을 하직했을 공산이 크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험칙이나 상식에만 기대어 아무 증거도 없이 나이만 가지고서 사망자로 단정하는 것은 용납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납북자의 저작권을 유족 아닌 가족이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권자가 납북자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납북자에 대한 失蹤宣告를 법원에 신청하여 실종선고를 받아 호적상으로 사망 처리를 하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납북된 채 생사불명이 된 것만도 기막힌 노릇인데 법적인 사망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을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으로 간 문인들의 저작권 행사문제는 법적인 장벽에 차단 당한 격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는 납북자 가족의 동의만 얻으면 출판을 하는 데 물의를 일으킬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분규가 벌어지면 법적으로는 무권리자들끼리의 싸움이 되고 당초에 가족과 계약한 사람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P형! 남북분단의 아픔이 저작권에까지 번지게 됨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으로 간 사람들의 저작권에 관한 특례법이라도 만들어 그들의 저작권을 민법상의 재산상속권자(들)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납북작가들의 책의 출판을 둘러싸고 법의 형식논리에 얽매어 분규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P형, 분단도 없고 금서도 없는 세상이 어서 와야만 하겠습니다. 건필을 기대합니다.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

■ 존 A. 위커/정진국

오늘날 문화의 實勢로서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대중매체 시대에 순수미술은 여전히 유효한가? 갈피잡기 어려운 후기 모더니즘의 상황에서 예술과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은 아직도 남아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미들섹스 폴리테크닉의 교수이자 주목받는 비평가 존 A. 위커는 이같은 질문에서 시작하여 우리시대 미술과 대중매체의 실체를 간명하게 파헤친다.

• 값 2,500 원

열화당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5-5
715-1588, 717-0613, 719-4167

韓國隨筆文學史	張德順
韓國上古文學論	金承燦
韓國古代歌謠	黃況江·尹元植
한국사기물격의 이론	성기옥
古小說論	成賢慶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설성경·설태성
開化期 演劇 社會史	柳敏榮
民譯形態論 V. Propp	유영대
歷史學入門 T. Schieder	林采源·金相泰 譯
高麗武人政權研究	金塘澤
國家形成論	金光德·李鍾旭 編
壇君神話論集	李基白 編

圖書出版 **씨문화** 서울·麻浦區 龍江洞494-80
電話 (719) 3271·3279

○ 유방암으로 사망한 주부의 병상일기 ○

암으로 고통받는 이와 가족들에게

- 나는 좀더 살고 싶다. 내 사랑 하는 아들과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 유방암으로 3년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주부의 병상일기가 가족들의 간병기와 함께 책으로 엮여 출간

값 3,200원
도서출판 **대학서림** 763-1220
745-1220

最新 하이테크事典

〈新素材〉 값 4,500원

145종의 尖端素材 解説書!

新素材의 개발만이 미래 經濟戰爭에 살아남을 수 있다!!

파인 세라믹/복합재료/금속재료
기능성 고분자 재료/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전자재료

검지사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95-1
TEL : 392-2360, 363-9586